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613650			
등록번호	110111-6136504			
상 호 주식회사 힐스테이트봉담대한제6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H illstate Bongdam Daehan New Stay REIT 6 Co., Ltd.)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2021.03.19 변경 2021.03.19 등기
<b>공고방법</b> 일간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b>1주의 금액</b>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 목 적

금 67,490,000,000 원

2019.02.16 변경

2019.02.18 등기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498,000 주

2,914,000 주

600,000 주

550,000 주

9,434,000 주

- 1.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2. 부동산개발사업
- 3. 주택건설사업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비종우선주식

씨종우선주식

에이종우선주식

- 4. 부동산의 임대차
- 5. 증권의 매매
- 6. 금융기관에의 예치
- 7.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 8.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 리 및 처분
-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 임원에 관한 사항

감사 박우표 690916-\*\*\*\*\*

2019 년 03 월 29 일 중임 2019 년 04 월 05 일 등기 2022 년 03 월 31 일 중임 2022 년 04 월 04 일 등기

열람일시 : 2023년03월23일 09시13분42초

등기번호 613650

기타비상무이사 이용로 820213-\*\*\*\*\*\*\*
2021 년 08 월 05 일 취임 2021 년 08 월 11 일 등기

사내이사 정미숙 660803-\*\*\*\*\*\*\*
2022 년 03 월 31 일 취임 2022 년 04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정미숙 66080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55길 6, 301호(사당동)
2022 년 03 월 31 일 취임 2022 년 04 월 04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영복 590120-\*\*\*\*\*\*\*
2023 년 03 월 10 일 취임 2023 년 03 월 21 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비종우선주식

- ① 회사는 오천만(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 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씨종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종 우선주식은 누적적, 참가적이고 의결권이 있으며, 비종 우선주식과 씨종 우선주식은 누적적이고 의결권이 있다. 본 정관에서 "참가적"이란 본 조 제8항 제3호 및 제9항 제3호에 따라 초과처분이익의 배당 또는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먼저 에이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연 3.68%의 비율(이하 "에이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비종 우선주식,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비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3.68 %의 비율(이하 "비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금액을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씨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9.07 %의 비율(이하 "씨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⑤ 어느 영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하되, 종류주식에 대한 이러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비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순서로 배당함)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⑥ 주식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느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출자금 납부일(해당 영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하며, 이하 같음) 익일부터 당해 영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

산"이라 한다)의 매각(일부 매각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 1.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배당과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진행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제2호 중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2.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에이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아래에 정의됨)" 이상 상승한 경우,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30%에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하 "초과처분이익"이라 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 "기준매각가격" = (공동주택의 시세) × (1 + r1)의 n/365제곱 +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 (1 + r2)의 n/365제곱
-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또는 감정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8. 12. 3. 개최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해 승인 한 시세를 의미함.
- \* r1: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1.5%를 의미함.
- \* r2: 근린생활시설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0.0%를 의미함.
- \* n: 주식회사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함.
- 4.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3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5호 중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5.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항 제4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비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6.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4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7호 중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

613650

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7.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조 제6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씨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 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 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 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⑨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 1. 본 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2. 청산시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에이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에이종 우선주식의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면,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해기 배당된 금액은 본 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 이상 상승한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초 과처분이익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단, 본 조 제8항 제3호에 의하여 이미 배당받은 초과처분이익 부분이 있는 경우, 이는 본 호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대상에서 공제한다.
- 4. 본 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5. 청산 시까지 비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4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비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비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6. 본 조 제8항 제6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 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7. 청산 시까지 씨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씨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씨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019 년 02 월 16 일 설정 2019 년 02 월 18 일 등기

씨종우선주식

613650

- ① 회사는 오천만(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씨종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종 우선주식은 누적적, 참가적이고 의결권이 있으며, 비종 우선주식과 씨종 우선주식은 누적적이고 의결권이 있다. 본 정관에서 "참가적"이란 본 조 제8항 제3호 및 제9항 제3호에 따라 초과처분이익의 배당 또는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먼저 에이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연 3.68%의 비율(이하 "에이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비종 우선주식,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비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3.68 %의 비율(이하 "비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씨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9.07 %의 비율(이하 "씨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⑤ 어느 영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하되, 종류주식에 대한 이러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비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순서로 배당함)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⑥ 주식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느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출자금 납부일(해당 영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하며, 이하 같음) 익일부터 당해 영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일부 매각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 1.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배당과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진행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제2호 중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2.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에이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613650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아래에 정의됨)" 이상 상승한 경우,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30%에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하 "초과처분이익"이라 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 "기준매각가격" = (공동주택의 시세) × (1 + r1)의 n/365제곱 +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 (1 + r2)의 n/365제곱
-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또는 감정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8. 12. 3. 개최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해 승인 한 시세를 의미함.
- \* r1: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1.5%를 의미함.
- \* r2: 근린생활시설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0.0%를 의미함.
- \* n: 주식회사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함.
- 4.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3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5호 중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5.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항 제4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비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예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6.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4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7호 중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7.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조 제6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씨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⑨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 1. 본 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613650

- 2. 청산시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에이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에이종 우선주식의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면,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해기 배당된 금액은 본 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 이상 상승한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초과처분이익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단, 본 조 제8항 제3호에 의하여 이미 배당받은 초과처분이익 부분이 있는 경우, 이는 본 호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대상에서 공제한다.
- 4. 본 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5. 청산 시까지 비중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4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비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비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6. 본 조 제8항 제6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 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7. 청산 시까지 씨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씨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씨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019 년 02 월 16 일 설정 2019 년 02 월 18 일 등기

#### 에이종우선주식

- ① 회사는 오천만(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종 우선주식을, 일천만(1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씨종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종 우선주식은 누적적, 참가적이고 의결권이 있으며, 비종 우선주식과 씨종 우선주식은 누적적이고 의결권이 있다. 본 정관에서 "참가적"이란 본 조 제8항 제3호 및 제9항 제3호에 따라 초과처분이익의 배당 또는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먼저 에이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연 3.68%의 비율(이하 "에이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비종 우선주식,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비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3.68

613650

- %의 비율(이하 "비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금액을 씨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매 결산기에 씨종 우선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9.07 %의 비율(이하 "씨종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⑤ 어느 영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하되, 종류주식에 대한 이러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비종 및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에이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비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배당, 해당 영업연도의 씨종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순서로 배당함)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⑥ 주식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느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출자금 납부일(해당 영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하며, 이하 같음) 익일부터 당해 영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일부 매각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 1.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배당과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진행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제2호 중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2.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에이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에이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아래에 정의됨)" 이상 상승한 경우,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30%에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하 "초과처분이익"이라 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 "기준매각가격" = (공동주택의 시세) × (1 + r1)의 n/365제곱 +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 (1 + r2)의 n/365제곱
-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또는 감정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8. 12. 3. 개최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해 승인

\_

613650

한 시세를 의미함.

- \* r1: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1.5%를 의미함.
- \* r2: 근린생활시설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0.0%를 의미함.
- \* n: 주식회사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함.
- 4.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3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5호 중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5. 비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항 제4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비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6.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4항에 따른 배당금액을 우선배당하고, 본 조 제5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7호 중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 7. 씨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조 제6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함)이 씨종 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예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⑨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 1. 본 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2. 청산시까지 에이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에이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에이종 우선주식의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면,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해기 배당된 금액은 본 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 이상 상승한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초 과처분이익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단, 본 조 제8항 제3호에 의하여 이미 배당받은 초과처분이익 부분이 있는 경우, 이는 본 호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대상에서 공제한다.
- 4. 본 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613650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5. 청산 시까지 비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4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비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6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비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비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비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6. 본 조 제8항 제6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 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7. 청산 시까지 씨종 우선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본 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씨종 우선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9.0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씨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과 씨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씨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8항 제7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019 년 02 월 16 일 설정 2019 년 02 월 18 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2. 합병
- 3. 파산
-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5.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 6.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 7.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회사성립연월일

2016 년 07 월 29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6 년 07 월 29 일 등기

613650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열 람 용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3년03월23일 09시13분42초